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해 단기과정부터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조의6)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기준 및 인가 절차, 입학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조의7)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공심화과정”을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4조”를 “제50조의4, 제54조”로 한다.

제58조의6 및 제5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 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 학과
2. 수업연한
3.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4. 교육 및 실습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5.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6. 교육과정 운영계획
7.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8.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 그 밖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8조의6제1항

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계획서를 2021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수여는 법 제35조·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 제50조의4, 제54조 -----
----. -----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 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 학과
2. 수업연한
3.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4. 교육 및 실습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5.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

획

6. 교육과정 운영계획

7.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8.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후 3
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 그 밖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
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두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
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3년 이
상인 사람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의

<신 설>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고숙련 기
술 전문가의 양성에 필요한 교
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따른 전
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
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394